의 안 번 호	15875

비 용 추 계 서

법안비용 추계1과 2015-279

의 뢰 인 : 김 태 년 의 원
접 수 일 : 2015년 6월 17일
회 답 일 : 2015년 8월 26일

담 당 : 김 종 화 과 장
남 정 희 분석관
내용문의 : 02-788-464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첨부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 등(안 제5조제3항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한다.

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설치(안 제19조의2 신설)

장애인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산하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둔다.

다. 시·도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안 제20조의2 및 제21조의2 신설)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 장애인평생교육기회 및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라. 평생교육사의 배치(안 제26조제3항)

시·도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 등

개정안은 이 법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현행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평생교육의 실상이 문자해득교육(=문해교육) 수준에 불과하다고 진단하고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사항들을 이 법에 명확히 추가 규정함으로써 이 법의 목적[1]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과 평생교육”을 명시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의무를 추가하고(안 제5조제3항 신설), 5년 마다 수립하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세부항목에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안 제9조제2항),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추가 및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분과로 “장애인위원회”를 설치(안 제10조제2항 및 제5항)하는 한편, 시·도 및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에 장애인평생교육 전문가를 각각 포함(안 제12조제4항 및 안 제14조제3항)하고 평생교육 통계조사에 장애인평생교육 통계가 포함되도록(안 제18조제1항)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조항들은 이미 현행 법률들에 규정되어 있거나[2], 교육부 또는 보건복지

1) **「평생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한민국헌법」 第31條 ⑤國家는 平生敎育을 振興하여야 한다.
-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및 제34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조문 생략)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11.21.시행, 법률 제12618호, 2014. 5.20.제정)

부 등이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조정하는 방법[3]으로 개정 취지가 달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추가 재정소요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시·도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개정안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산하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고(안 제19조의2 신설),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 장애인평생교육기회 및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위해 시·도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며(안 제20조의2 신설),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을 위해 장애인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도록(안 제21조의2)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1)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설치

이와 관련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4]은 교육부로부터 국가단위의 평생교육 관련 정책을 위임받은 전담기구인 바, 개정안 제19조의2[5]에서 국가장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의사소통지원) 및 **제26조(평생교육 지원)** (조문 생략)

3) 위원회에 특정 분과위를 설치하고 위원 구성에 특정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운영세칙 등을 통해, 평생교육 통계조사에 장애인관련 항목을 포함하는 것은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아니함.

4) **「평생교육법」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5.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구축
6.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7.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9.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운영
9의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정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2015년도의 경우 73억 3,200만원을 출연함.

5) 안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②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애인평생교육센터가 수행하도록 한 사업들을 이미 포함[6]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육부의 국립특수교육원[7]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8] 등의 업무와도 중복될 수 있다.

한편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진흥원이 교육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므로 정관(定款) 중 사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1.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간의 연계체제 구축
6.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7.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8.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 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9.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10.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③「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7)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국립특수교육원)** ① 국립특수교육원에 총무과·기획연구과·연수과 및 정보지원과를 둔다.

④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2. 특수교육의 장애유형별 중장기계획의 수립·시행
3. 특수교육 국제교류 협력 및 국제비교 연구
4. 장애유형별 학습자료의 개발·보급
5. 특수교육 학술·홍보 업무 총괄
6.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개발, 수시 개정, 운영 및 적용 지원
7.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편찬 및 수정
8. 장애 영아·유아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담당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및 학부모, 특수교육지원인력의 연수에 관한 사항
3. ~ 7. (생략)
8.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진로·직업교육 지원

⑥ 정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교육복지정보지원센터의 운영
2. ~ 5. (생략)
6.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원
7. 특수교육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8) **「장애인복지법」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복지진흥·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015년의 경우,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1538-300)에 민간경상보조로 52억 2,800만원을 지원함.

할 것이며,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사업이 중복 집행되지 않도록 진흥원의 자체 예산 및 인력을 활용하거나 정부의 각종 장애인 관련 사업들을 조정함으로써 진흥원에 추가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신설로 인하여 추가되는 재정소요는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시·도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개정안에서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또는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을 각각 신설하여 수행토록 하려는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사업은, 현행법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제20조), 시·군·구평생학습관(제21조) 또는 읍·면·동평생학습센터(제21조의2)를 통해 일부 수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9].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14년의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이 설치되어 있는 14개 시·도[10]에 총 8억 8,000만원(지자체 대응예산은 총 12억 1,11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 마다의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사업규모 등[11]을 추정함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다. 평생교육사의 배치

개정안(제26조제3항)에서 신설되는 시·도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에 각각 평생교육사[12]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④「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4143-300)을 통해 재정지원(2015년의 경우 58억원)을 하고 있는 바, 내역사업은 평생학습도시 지정(136개 시·군·구), 행복학습지원센터 운영(읍·면·동 단위) 등임.

10) 경남의 경우 경남발전연구원에 지정·위탁(2015.1.1.), 세종시 및 전북의 경우 미설치(2015.12.내 예정).

11)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201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Ⅱ-1)에서 발달장애인 지원(1535-309)을 위한 사업비(121억 4,900만원)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비' 51억원(지자체 보조 50%)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서도 개정안의 취지가 일부 달성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11.21.시행, 법률 제12618호, 2014. 5.20.제정)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②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2)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7조(직무범위)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예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행법에 평생교육사의 배치 대상기관 및 기준[13],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보조[14] 근거가 이미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4년말 현재 평생교육사가 배치된 곳은 전체 평생교육기관(4,339개) 중 3,145개(배치비율 72.5%)[15]이고, 평생교육사 채용과 직접 관련하여 지원한 예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의 규모, 배치기준에 따른 평생교육사 정원, 인건비 현황 등을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동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자체 마다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대신, 장애인평생교육을 전담하는 평생교육사 1명씩 추가하고 인건비의 50%를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부담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국비 및 지방비가 각각 연 24억 1,000만원씩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16], 동 비용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1.5%)만큼 인상될 수 있다.

평생교육사 채용 보조(50%)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액: (2017~2021)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인건비 (국고지원분)	2,430	2,466	2,503	2,541	2,579	12,51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교수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13) **「평생교육법」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2]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배치대상	배치기준
1. 진흥원, 시·도진흥원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2. 시·군·구평생학습관	○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3.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14) **「평생교육법」 제27조(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15) 자료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16) 평생교육사(2급) 초임연봉 2,000만원 가정 시, 총 재정소요액은 최초연도 48억 6,000만원임.
※국비(=지방비) = 2,000만원 × 50% × (17시·도 + 226시·군·구)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1과

과　　장　김 종 화

예산분석관　남 정 희(788-4648, koba27@na.go.kr)